

신청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가업승계제도를 위한 일본의 세금지원혜택에 대해서 - 사업승계세제를 중심으로 -

김대홍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I 사업승계세제의 개요

1. 의의¹⁾

일본의 사업승계세제(事業承継税制)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도 세제개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경제의 핵심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이 경영자의 사망 등으로 받게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경영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계속을 통한 고용확보나 지역경제의 활력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도입 과정²⁾

사업승계세제의 도입과정을 보면 우선 2008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거래시세 없는 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2009년도 세제개정에서 창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윤곽이 마련되었다. 또한 사업승계세제의 전제가 되는 경제산업대신(經濟産業大臣)의 '인정(認定)' 등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平成20年法律第33号):이하 '경영승계원활화법'이라고 함)'이 2008년 5월에 제정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세제개정에서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상속세 납세유예제도가 창설되었고, 아울러 증여세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증여세 납세유예제도가 창설되었다.

1 일본에서 사업승계세제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中小企業庁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husho.meti.go.jp/zaimu/shoukei/shoukei_enkatsu.htm.

2 是枝俊悟·小林章子, "事業承継税制見直しは地方の活性化につながるか", 大和総研調査季報(2018年春季号, Vol.30), 2018, 37-9頁 참조.

3. 개정 과정³⁾

사업승계세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창설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업승계세제의 적용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뒤에 적용요건의 완화 내지 납세유예 종료 시의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사업승계세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 사업승계세제의 개정 과정*

적용기간	고용확보요건 개정	납세액 감면 개정	선대경영자·후계자 관계요건 완화	기타 주요 개정
2013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사전확인요건 폐지(임의화)
20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평균 8할 유지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유예세액 면제사유 확충(사업회생 추가) 경영승계 기간 중 이자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자 요건 완화 (친족 외 승계 대상화) 선대 경영자요건 완화 (증여·상속시 임원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방법의 확충 (연납·물납 가능)
2015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특례를 받는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면제 		
2017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특례와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병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여자 사망시 상속특례의 적용요건 완화 (중소기업요건·비상장요건 폐지)
2017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끝수 올림 ⇒ 끝수 없앴 (종업원 수 계산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산업대신(經濟産業大臣) ⇒ 도도부현지사(都道府県知事) (절차창구의 변경)
201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대 경영자 이외 ⇒ 후계자(1명)에 대한 승계가 대상으로 (적용 대상자 확대) 	
2018년 1월~ 202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평균 8할을 밑돌아도 납세유예 기간이 계속(요건 대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예 주식·유예세액 확대 (전체주식·전액납세유예)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감면제도 친족 외 승계 등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대 경영자 이외 ⇒ 특례 후계자(최대 3명)에 대한 승계가 대상으로(적용 대상자 확대) 	

* 是枝俊悟·小林章子, “事業承継税制見直しは地方の活性化につながるか”, 大和総研調査季報(2018年春季号, Vol.30), 2018, 41頁, 図表2 참조.

3 是枝俊悟·小林章子, “事業承継税制見直しは地方の活性化につながるか”, 大和総研調査季報(2018年春季号, Vol.30), 2018, 39-44頁 참조.

개정 중 주요한 것으로는 우선 2013년도 세제개정에서 ① 보다 많은 기업에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 완화', ② 제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담 경감', ③ 번거롭지 않고 이용하기 편리한 제도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를 세 가지를 목표로 하여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어 2017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와 심각한 인력난, 재해의 빈발 등의 사회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승계세제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2017년 7월 7일에 공표된 중소기업청 '사업승계 5개년 계획(事業承継5ヶ年計画)'에서는 사업승계 현황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0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70세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70·80대의 경영자 60% 이상이 후계자 미정임을 지적하면서 향후 5년 정도를 사업승계지원의 '집중실시기간(集中実施期間)'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사업승계계획을 제출하고 10년 이내에 실제로 승계를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년 간의 시한조치로서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의 납세유예 특례 제도를 창설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승계세제와는 별도로 대폭 확충된 특례조치가 10년간 한정(2027년 12월 31일까지)으로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세제개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를 위한 개인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역시 10년 간의 시한조치(2028년 12월 31일까지)로서 창설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승계세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사업승계세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간 사업승계세제와 관련한 세제개정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증여·상속의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업승계세제를 차례로 살펴본 뒤에 끝으로 가장 최근의 2018년·2019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특례조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 사업승계세제 대상 중소기업자

1. 경영승계원활화법 규정⁴⁾

경영승계원활화법은 제2조에서 사업승계세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3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 사업자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기타 업종(다음 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 및 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
2.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1억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 사업자로 도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

4 해당 법률의 원문은 다음의 e-Govヘルプ 웹사이트 참조: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0AC0000000033.

3.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제5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
4.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엔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회사 및 개인사업자로 소매업(다음 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
5.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업종 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회사 및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수가 업종 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회사 및 개인사업자로 그 정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

2. 경영승계원활화법 시행령 규정⁵⁾

경영승계원활화법 제2조 제5호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령(政令)은 동법 시행령(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을 말하는 것으로 동시행령 제1조에서는 자본금 액수 및 출자 총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 종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	종업원 수
1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을 제외함)	3억엔	900명
2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처리 서비스업	3억엔	300명
3	여관업	5천만엔	200명

이상의 경영승계원활화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승계세대 대상 중소기업자의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표 21 경영승계원활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자 요건

업 종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	종업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기타 업종(고무제품 제조업 제외)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 제외)		900명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5 해당 시행령의 원문은 다음의 e-Govヘルプ 웹사이트 참조: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20CO000000245.

III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상속한 경우⁸⁾

1. 개요

2009년 4월 1일 '소득세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所得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21年法律第13号))'의 시행으로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昭和32年法律第26号))'이 개정되면서 사업승계제제가 대폭 확충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상속세 감면조치가 기존의 10% 감액에서 80% 세금유예로 대폭 확충되는 동시에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2.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상속세 납세유예제도에 대해서는 후계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단, 상속 개시 전부터 후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완전의결권주식 등을 포함 해당 중소기업 발행 완전의결권주식 등 총수의 3분의 2가 상한임)에 관련된 상속세 80%가 납세유예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2 제1항). 본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한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아 5년간 고용확보를 비롯한 사업계속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후에도 기본적으로는 후계자가 대상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요구되고 후계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가 면제된다(단, 5년간은 대상 주식 등을 일부라도 양도하면 전체 유예세액의 납기한도가 도래하는 반면 5년 경과 후에는 양도한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유예세액의 납기한도가 도래함). 또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후계자가 '다음 후계자'에 주식 등을 증여하고, 해당 '다음 후계자'가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3.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에 대해서는 후계자가 증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단, 증여 이전부터 후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완전의결권주식을 포함 해당 중소기업 발행 완전의결권주식 등 총수의 3분의 2가 적용 상한임)에 관련된 증여세 100%가 납세유예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 제1항). 본 제도에 있어서도 상속세 납세유예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을 받은 뒤 5년의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대상 주식 등의 계속 보유가 요구된다. 또한 후계자의 사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상속세 납세유예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유예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선소유자(증여자)가 사망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받은 주식 등은 선대 경영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가 부과된다(증여 시의 가액을 기초로 계산된 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7의3 제1항). 이 때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8 中小企業庁 財務課, “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申請マニュアル”, 2013, 73-125頁 참조: 2013년 4월 1일 시행의 경영승계원활화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平成25年經濟産業省令第18号)에 의한 개정 후의 경영승계원활화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른 것임.

‘확인’을 받음으로써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납세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의 7의4 제1항). 즉, 증여세의 납세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동안 선대 경영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유예에서 상속세의 납세유예로 전환하여 적용받음으로써 납세유예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승계세제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를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상속뿐만 아니라 생전증여에 의한 주식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장래에 걸쳐 원활한 사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경제산업대신의 인정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에 대해서는 관련하는 복수의 절차가 있다. 기본적인 절차의 구성은 ① 인정(증여 또는 상속 개시 후), ② 사업계속보고(납세유예 적용 중 5년간 매년 1회)이다. 그리고 ②의 사업영위 기간 중에 타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합병하는 회사에 인정을 승계할 수 있다.

2013년도 세제개정에서 계획적 승계 관련 활동에 관한 경제산업대신의 사전 확인이 인정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경제산업대신에게 인정 신청하는 신청자는 사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신청자 또는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확인서의 교부 신청을 하고 2013년 4월 1일 이후에 확인서의 교부를 받은 신청자는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IV 2015년 1월 1일 이후 증여·상속한 경우⁹⁾

1. 사업승계세제 개요

사업승계세제는 후계자인 수증자·상속인 등이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인정을 받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상속 등에 의해 취득했을 경우에 그 비상장주식 등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납세를 유예받고, 후계자의 사망 등에 의해 납세가 유예되고 있는 증여세·상속세의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1)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중소기업의 사업계속을 통한 고용확보나 지역경제의 활력유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후계자가 도도부현지사(都道府県知事)의 인정을 받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선대 경영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했을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9 中小企業庁, “-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申請マニュアル”, 2019, 2-25頁 참조.

(2) 개인사업용 자산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개인사업자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확보나 지역경제의 활력유지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후계자가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선대 사업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가 유예 또는 면제된다.

2.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후계자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함)에 관련된 증여세 100%가 유예된다. 이는 증여 이전부터 후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포함하여 해당 중소기업 주식 등의 총수의 3분의 2를 상한으로 한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거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보고 기간(원칙적으로 증여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간) 동안 고용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이후에는 후계자가 대상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증여자의 사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납부유예 중 선대 경영자(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예된 증여세는 면제된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선대 경영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가 과세된다(증여 시의 가액으로 계산). 이 때 도도부현지사의 확인(이하 '전환확인'이라고 함)을 받는 것으로 상속세의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다.

3.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후계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함)에 관련된 상속세 80%가 유예된다. 이는 상속 이전부터 후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을 포함하여 해당 중소기업 주식 등의 총수의 3분의 2를 상한으로 한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거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보고 기간(원칙적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간) 동안 고용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이후에는 후계자가 대상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후계자의 사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가 면제된다.

4. 고용유지 요건

사업승계제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상속 개시 당시 종업원 수의 80%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업원 수의 원칙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판정기준] 증여 시(상속 시)의 종업원 수에 0.8을 곱한 수 (끝수 버림)

② [실적] 5년간의 연차보고 시 종업원 수의 합계를 5로 나눈 수(반올림 없음)

이 때 ②의 [실적]이 ①의 [판정기준]을 밑돌았을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다.

2017년 세제개정으로 [판정기준]이 '끝수 올림'에서 '끝수 버림'으로 바뀌으로써, 인정 취소 기준이 완화되었다. 예를 들어 증여 또는 상속 시 종업수가 4명일 경우 2017년 세제개정 이전에는 "4명*0.8=3.2명"에서 '3.2명' 끝수 올림으로 4명이 종업원 수 80%의 [판정기준]이 되지만, 2017년 세제개정 이후에는 '3.2명' 끝수 버림으로 3명이 종업원 수 80%의 [판정기준]이 된다. 따라서 4명의 종업원이 3명으로 줄었을 경우 2017년 세제개정 이전에는 인정 취소에 해당하지만, 2017년 세제개정 이후에는 인정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계산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증여보고기간의 말일이나 상속보고기간의 말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 유예계속증여

증여세·상속세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수증자·상속인(2대)이 납세유예 주식을 다음의 후계자(3대)에게 증여하고, 그 후계자(3대)가 증여세 납부유예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2대가 유예를 받고 있는 증여세·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6. 도도부현지사의 인정

1) 개요

사업승계세제에 따른 증여세·상속세 납부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거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정 요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선대 경영자에 관한 요건, 후계자에 관한 요건, 대상 회사에 관한 요건 등이 있다. 증여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나. 인정 효력

인정의 효력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에서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사업계속보고(연차보고, 5년간 인정유효기간 중 매년 1회)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계속기간 중에 타사에 흡수·합병되었을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합병 회사에 인정을 승계할 수 있다.

다. 사전 확인

2013년도 세제개정에서 경영승계원활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확인(사전 확인)이 인정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이후에 인정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전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사전 확인의 확인서를 첨부해 인정 신청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인정 요건

증여세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경영승계원활화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7호)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선대 경영자(증여자) 요건

- 회사 대표자였을 것
- 증여 시까지 대표자를 퇴임할 것(유급임원으로 남는 것은 가능)
- 증여 직전 선대 경영자와 동족 관계자(친족 등)에서 발행 의결권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동족 내(후계자 제외)에서 최대주주일 것
- 일정수 이상의 주식을 일괄하여 증여하는 것 등

나. 후계자(수증자) 요건

- 회사의 대표자일 것
- 20세 이상이고 임원 취임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을 것
- 증여 이후 후계자와 동족 관계자(친족 등)에서 발행 의결권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동족 내에서 최대주주가 될 것 등

다. 대상 회사 요건

- 중소기업일 것
- 상장회사,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산보유형회사 등(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 70% 이상 있는 회사나 이들 특정 자산의 운영수입이 75% 이상인 회사)이 아닐 것
- 단, 일정한 불가피 사유에 의한 경우나 일정한 사업실정(종업원 수, 점포 사무소의 유무, 사업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보유형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라. 사업계속 요건

납세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건 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요 건	5년 간	5년 경과 후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자일 것	○	X
종업원 수 80% 이상을 5년 간 평균 유지할 것	○	X
후계자가 동족 내에서 최대주주일 것	○	X
상장회사,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X
유예 대상이 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	○	○*
자산보유형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양도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와 이자세를 납부함.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계속 납세가 유예됨.

(3)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인정 요건

상속세 납세유예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경영승계원활화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선대 경영자(피상속인) 요건

- 회사 대표자였을 것
- 상속 개시 직전에서 선대 경영자와 동족 관계자(친족 등)에서 발행 의결권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동족 내(후계자 제외)에서 최대 주주일 것 등

나. 후계자(상속인) 요건

- 상속 개시 직전에 대상 회사의 임원(선대 경영자의 친족 이외에도 적용됨)일 것
- 상속 개시 이후 후계자와 동족 관계자(친족 등)에서 발행 의결권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동족 내에서 최대 주주가 될 것 등

다. 대상 회사 요건

- 중소기업일 것

- 상장회사,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산보유형회사 등(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이 70% 이상 있는 회사나 이들 특정 자산의 운영수입이 75% 이상인 회사)이 아닐 것
- 단, 일정한 불가피 사유에 의한 경우나 일정한 사업실정(종업원 수, 점포 사무소의 유무, 사업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보유형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라. 사업계속 요건

납세유예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요건 등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요 건	5년 간	5년 경과 후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자일 것	○	X
종업원 수 80% 이상을 5년 간 평균 유지할 것	○	X
후계자가 동족 내에서 최대주주일 것	○	X
상장회사, 풍속영업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	X
유예 대상이 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	○	○*
자산보유형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양도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와 이자세를 납부함.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계속 납세가 유예됨.

IV 2018년·2019년도 세제개정 특례조치

1. 개요

(1) 2018년도 세제개정 특례조치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사업승계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조치(이하 ‘일반조치’라고 함)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보다 뒷받침하기 위한 10년간의 한정조치(2027년 12월 31일까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납세유예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제한(총 주식 수의 최대 3분의 2까지)의 폐지나 납세유예 비율의 인상(80%에서 100%) 등을 골자로 하는 특례조치(이하 ‘특례조치’라고 함)가 창설되었다. 사업승계세제의 특례조치와 일반조치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 |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와 일반조치의 비교*

	특례조치	일반조치
사전계획 책정	5년 이내의 특례승계계획 제출 (2018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불요
적용기한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8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없음
대상 주식 수	전 주식	총 주식 수의 최대 3분의 2까지
납세유예 비율	100%	증여:100% / 상속:80%
승계유형	복수의 주주로부터 최대 3명의 후계자	복수의 주주로부터 1인의 후계자
고용확보 요건	탄력화	승계 후 5년간 평균 80%의 고용유지 필요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면제	있음	없음
상속 시 정산과세의 적용	60세 이상의 자로부터 20세 이상의 자에게 증여	60세 이상의 자로부터 20세 이상 추정 상속인·손자에게 증여

* 中小企業庁, “経営承継円滑化法-申請マニュアル”, 2019, 2頁 参考 참조.

(2) 2019년도 세제개정 특례조치

2019년도 세제개정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한 사업의 지속적 발전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10년간 한정으로 다양한 사업용 자산의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증여세를 100% 납세유예하는 ‘개인판 사업승계세제’가 창설되었다. 기존의 사업승계세제가 중소 법인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개인판 사업승계세제는 개인사업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 | 개인판 사업승계세제와 법인판(특례조치)의 비교*

	법인판 (특례조치)	개인판
사업계획 책정	5년 이내의 특례승계계획 제출 (2018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 이내의 개인사업승계계획 제출 (2019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8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9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특정사업용 자산
납세유예 비율	100%	100%

	법인관 (특례조치)	개인관
승계유형	복수의 주주로부터 최대 3명의 후계자	선대 1명부터 후계자 1명 원칙 (일정한 경우 동일생계 친족 등으로부터도 가능)
증여요건	일정 수 이상의 주식 등을 증여할 것 (후계자 1명의 경우 2/3이상 등 원칙)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정사업용 자산의 전부를 증여할 것
고용확보 요건	있음 (특례조치는 탄력화)	고용요건 없음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면 등	있음	있음 (후계자가 중증장애 등의 경우는 면제)
경영승계원활화법 인정의 유효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간	최초 승계(증여·상속)로부터 2년간

* 中小企業庁, “経営承継円滑化法-個人の事業用資産についての相続税、贈与税の納税猶予制度の概要”, 2019, 4頁, 参考 참조.

2.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¹⁰⁾

(1)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후계자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에 관련된 증여세 100%가 유예된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거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보고기간(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간) 동안 대표자로서 경영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이후에는 후계자가 대상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후계자의 사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예된 증여세는 면제된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가 과세된다(증여시의 가액으로 계산). 이 때 도도부현지사의 전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상속세의 납세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후계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에 관련된 상속세 100%가 유예된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거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보고기간(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간) 동안 대표자로서 경영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이후에는 후계자가 대상 주식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한 후계자의 사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가 면제된다.

10 中小企業庁, “経営承継円滑化法-申請マニュアル”, 2019, 1-9頁 참조.

(3) 특례승계계획¹¹⁾

사업승계세제(특례조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특례승계계획을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례승계계획에는 후계자의 이름과 사업승계의 예정시기, 승계 시 경영전망이나 승계 이후 5년 간의 사업계획 등을 기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에 의한 지도 및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경영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인 지원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상공회와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외에 금융기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주요 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2019년 2월 현재 32,852개 기관.)

특례승계계획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계획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도도부현에 제출해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변경신청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기재하고, 다시 인정경영혁신등지원기관에 의한 지도 및 조언을 받아야 한다.

(4) 실적보고

특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이 80%를 밑돈 경우에도 인정이 취소되거나 바로 유예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도도부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보고에 즈음하여 인증경영혁신등지원기관이 고용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소견을 기재하고, 중소기업이 신고한 고용 감소의 이유가 경영 악화 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한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조언을 할 필요가 있다.

(5) 도도부현지사의 인정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영승계원활화법에 의거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정 요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회사에 관한 요건, 후계자에 관한 요건, 선대 경영자에 관한 요건, 선대경영자 이외의 주주 등에 관한 요건이 있다. 증여의 경우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요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11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中小企業庁 財務課, “特例承継計画に関する指導及び助言を行う機関における事務について” 2018, 1-9頁 참조.

나. 인정 효력

인정의 유효기간은 후계자마다 최초로 사업승계세제(특례조치)를 적용받는 증여에 관한 증여세의 신고기한 또는 상속에 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인정마다 사업계속보고(연차보고, 5년간 인정유효기간 중 매년 1회)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계속기간 중에 타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합병 회사에 인정을 승계할 수 있다.

다. 특례승계계획

중소기업이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으려면 '특례승계계획'을 도도부현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례승계계획의 기재사항은 후계자의 이름이나 사업승계의 시기, 승계 시 경영의 전망이나 승계 이후 5년 사업계획 등과 함께 인정경영혁신지원기관에 의한 지도 및 조언 내용 등이다. 본 특례승계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이다.

라. 사전 확인

2013년도 세제개정에서 사전 확인이 인정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이후에 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 확인을 받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덧붙여 사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전 확인의 확인서를 첨부해 인정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 확인을 받아도 특례조치의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특례승계계획을 제출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사전 확인을 받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전 확인의 변경·취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3. 개인판 사업승계세제¹²⁾

(1) 개요

2019년도 세제개정에서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 납세유예제도(이하 '개인판 사업승계세제'라고 함)가 창설되었다. 개인판 사업승계세제는 후계자인 수증자 또는 상속인 등이 사업용 택지, 건물, 감가상각자산(이하 '특정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을 증여 또는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하고 경영승계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정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납세를 유예받고, 후계자 사망 등의 경우 유예받은 증여세·상속세의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본 납세유예제도는 경영승계원활화법 제12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개인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인정 요건은 경영승계원활화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12 中小企業庁, “経営承継円滑化法-個人の事業用資産についての相続税、贈与税の納税猶予制度の概要”, 2019, 1-9頁 참조.

(2) 증여세 납세유예제도

후계자가 증여에 의해 취득한 특례수증사업용 자산(특정사업용 자산 중 증여세 납세유예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함)에 관련된 증여세 100%가 유예된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하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사업계속 이후에 후계자의 사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예된 증여세는 면제된 후에 증여받은 특례수증사업용 자산을 증여자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증여시의 가액으로 계산함). 이때 도도부현지사의 전환확인을 받는 것으로 상속세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유예 적용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도부현에 대한 보고(연차보고)는 필요 없지만, 세무서에 3년에 한 번 보고(계속신고)를 해야 한다.

(3) 상속세 납세유예제도

후계자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특례사업용 자산(특정사업용 자산 중 상속세 납세 유예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함)에 관련된 상속세 100%가 유예된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근거하는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사업계속 이후에 후계자의 사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가 면제된다. 또한 납세유예 적용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도부현에 대한 보고(연차보고)는 필요 없지만, 세무서는 3년에 한 번 보고(계속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是枝俊悟·小林章子, “事業承継税制見直しは地方の活性化につながるか”, 大和総研調査季報(2018年春季号, Vol.30), 2018.

中小企業庁 財務課, “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申請マニュアル”, 2013.

中小企業庁, “-中小企業経営承継円滑化法-申請マニュアル”, 2019.

中小企業庁, “-経営承継円滑化法-申請マニュアル”, 2019.

中小企業庁 財務課, “特例承継計画に関する指導及び助言を行う機関における事務について” 2018.

中小企業庁, “-経営承継円滑化法-個人の事業用資産についての相続税、贈与税の納税猶予制度の概要”, 2019.

일본 中小企業庁 웹사이트: <https://www.chusho.meti.go.jp/index.html>

일본 e-Govヘルプ 웹사이트: <https://www.e-gov.go.jp/>